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785 발의연월일: 2025. 6. 12.

발 의 자:이원택・윤준병・허성무

이광희 • 이병진 • 임호선

서삼석 · 임미애 · 문대림

문금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급안정을 위하여 재배면적관리가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배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에게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 기본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는 농업인들의 영농권, 경작 자율권, 작물 선택권 등을 침해할 수 있고, 타작물 전환 시 소득 보전을 위한 인센티브가 충분하지 않으면 농가 피해가 우려됨에도 현행법에는 재 배면적 조정의무 이행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하 려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심의 를 거쳐 재배면적 조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이행한 농업인등의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 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후 단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재배면적 조정의무는 제23조에 따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배면적 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그 조정계획에 따라 부과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배면적 조정의무 이행으로 발생하는 농업인등의 소득 감소에 대하여 소득감소분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배면적 조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	제13조(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		
과)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과) ①		
수급안정을 위하여 재배면적관			
리가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배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기본직접지불금 신청·등록 농			
업인등에게 재배면적 조정의무			
를 부과할 수 있다. <후단 신			
<u>설></u>	적 조정의무는 제23조에 따른		
	<u>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u>		
	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배면적 조정계		
	획을 수립하고 그 조정계획에		
	따라 부과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재배면적 조정의무		
	이행으로 발생하는 농업인등의		
	소득 감소에 대하여 소득감소		
	분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u>야 한다.</u>		
<u>③</u> (생 략)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3조(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 제23조(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

-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② ------사항을 심의한다.
- 1. ~ 3. (생략) <신 설>

4. (생략)

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 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 원회의 설치) ① (생 략) 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 1. ~ 3. (현행과 같음)
- 4. 재배면적 조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5. (현행 제4호와 같음)